#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3월 3일 김인숙, 김은화, 강동구 의원 등 7인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3월 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3. 10) 상정

○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3. 10) 수정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 인 숙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전체 노동자의 50%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그 중 200만이 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,

○ 전국 각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보장,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파업과 농성을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.

○ 이와 관련, 우리시 지역의 노동, 사회단체에서도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으로,

○ 우리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,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,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
나. 부천시 비정규노동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).

다. 부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.

라. 노동자의 기본권보장,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 부터 제15조까지).

## 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속기록 참고

| 질 의 내 용 | 답 변 내 용 |
|---|---|
| ○ 조례안 전체 조문에서 노동자라는 용어를 근로자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? | ○ 현재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보다 노동자 호칭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추세로서, 상위법 개정이 된 후에 신속히 개정함이 타당함. |
| ○ 조례안의 내용들이 현 노사민정협의회 기능과 중복으로 사료되어 노사민정협 | ○ 조례안과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이 상이하며,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은 참 |

| | |
|---|---|
| 의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?<br>○ 조례안 제9조 소위원회 관련 소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싶어 심의를 협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? | 여하지 않고 있음.<br>○ 심의를 협의로 수정함에 동의함. |
| ○ 조례안 제12조(사업) 제5호 여성노동상담 관련 제1조(목적)에 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? | ○ 당초에는 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나 조례안을 압축하는 최종 과정에서 생략되었으며, 조문 수정에 동의함. |
| ○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지원센터 지원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지? | ○ 전주시와 울산 북구가 있음. |
| ○ 조례안 제4조 협의회 구성관련 사용자가 제외되어 있는데 의견 수렴을 위하여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? | ○ 본 조례안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므로,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,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음. |

## 4. 토론요지

### 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### 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## 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## 6. 소수의견

○ 없 음

## 7. 기타 사항(관련 시민 의견 청취)

**○ 민주노총(경기・김포・시흥) 김 찬 조직국장**

①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를 해 주신 세분의 의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림.

② 전체 노동자의 50%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에 오늘 본 조례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되기를 기대합니다. 본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 공청회를 거치고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.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림.

부천시조례 제　　호

#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| 의 안 번 호 | 122 |
|---|---|
| 의 결 연월일 | 2011. 3. 10 |

제안년월일 : 2011년 3월 10일

제 안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○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및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, 소위원회 역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골자

○ “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”를 “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**“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모성권 보장 및 일가족 양립지원, 경력단절 예방**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”로 하고,(안 제1조).

○ “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

다”를 “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**협의**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”로 하며,(안 제9조 제1항).

○ “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, 노동조건,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지휘,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”를 “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, 노동조건,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**노력** 하여야 하며 매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”로 수정함.(안 제14조 제1항).

#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**「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1조 중 “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”를 “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**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모성권 보장 및 일가족 양립지원, 경력단절 예방 및**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”로 한다.

안 제9조제1항 “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**협의**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14조제1항 “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, 노동조건,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매년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지휘,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”를 “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, 노동조건,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**노력** 하여야 하며, 매년 노동관계법령 **위반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확인하고**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**위의 수정부분 이외의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.』**

# 수정안 대비표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천시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, 저임금,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**〈삽입〉** 근로조건의 (생략). | 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천시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, 저임금,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**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모성권 보장 및 일가족 양립지원, 경력단절 예방 및** 근로조건의 (제정안과 같음). |
| **제9조(소위원회)** ①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**심의**하기 위하여 (생략).<br>② 생략<br>③ 생략 | **제9조(소위원회)** ①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**협의**하기 위하여 (제정안과 같음).<br>② 제정안과 같음<br>③ 제정안과 같음 |
| **제14조(노동인권과 기본권 보장)** 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, 노동조건,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매년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지휘,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<br>② 생략<br>③ 생략 | **제14조(노동인권과 기본권 보장)** 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, 노동조건,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, 매년 노동관계법령 **위반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확인하고**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<br>② 제정안과 같음<br>③ 제정안과 같음 |

부천시조례 제　　호

#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천시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, 저임금,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모성권 보장 및 일가족 양립지원, 경력단절 예방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,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정책협의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정책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(이하 “비정규직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비정규직 노동자”라 함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　　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, 계약직, 일용직, 단시간근로자, 파견, 용역, 도급 노동자 등을 모두 말한다.

2. “공공부문”이라 함은 부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, 시의 산하기관(출연 및 투자기관 포함),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을 말한다.

## 제2장 비정규노동정책협의회

**제3조(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)** ① 부천시장은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반 노동인권 보호와 정책협의를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4조(협의회의 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② 협의회의 부위원장 중 1명 여성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시의 업무담당국장
2.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
3. 노동단체의 대표,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장

**제5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

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3,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
**제8조(회의개최 등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.
2.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소위원회)** ①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3장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

**제11조(설치)** ① 시장은 부천시 관내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(이하 “비정규직센터”라고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시장은 비정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단,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사업)** ①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
2.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
3. 노동관계법교육, 성평등교육,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,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
4.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,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 고용촉진사업
5. 여성노동상담, 여성비정규직연구조사사업, 모성보호, 일·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사업

6. 본 조례의 목적취지에 동의하는 노동,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연대사업

7. 부천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참여 등 부천시 공공부문 업체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관리 및 조사사업

8.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노동,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둔다.

**제13조(운영)** ① 시장은 필요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,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고 그 운영 절차는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② 위탁기간 및 그 운영, 해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제4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

**제14조(노동인권과 기본권 보장)** 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, 노동조건,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, 매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게공간과 샤워장, 세탁시설, 체육시설, 수유실, 성별 탈의실을 제공하고 탁아방, 어린이집 이용권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부천시가 민간 위탁하는 수탁업체의 변경 시 기존 고용 및 근로조건을 승계토록 하여야 하며 수탁업체와의 계약 해지 시에는 전환배치 등

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 등)** 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및 노동기본권의 숙지, 보장과 직장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비정규직센터,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6조(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